

제987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2. 소재지 :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 지식산업센터 A동 3층 35호
3. 대표자
성명 : 조성호
생년월일 : 1975년 04월 29일
주소 :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152, 806동 1602호
4. 사업내용
 - 제도 정책 연구 및 산업 환경 개선
 - 기술 품질 안전 경쟁력 강화
 - 산업 정보 시장 조사 및 통계 구축
 - 수출국제협력 및 산업 네트워크 확대
 - 인재 양성 홍보 및 산업 기반 조성

5.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 < 변경 사항 >

[illegible]

정 관



KoreaPetRelatedIndustryAssociation

사 단 법 인 반 려 동 물 연 관 산 업 협 회



2026년 2월 27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영문명 : Korea Pet Related Industr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사업자의 품위보전 및 상호협력의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한다. 또한 반려동물사료 및 용품업과 관련된 제도, 제조기술, 유통질서의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1차 A동 3층 35호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도·정책 연구 및 산업 환경 개선

가. 반려동물사료·의약품·용품·서비스 관련 법령·제도 조사·연구

- 나. 정책·제도 개선 건의 및 정부 위탁 업무 수행
- 2. 기술·품질·안전 경쟁력 강화
 - 가. 제조기술 향상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 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인증 사업
- 3. 산업 정보·시장 조사 및 통계 구축
 - 가. 산업 통계, 가격·유통 동향, 국내·외 시장 정보 수집·분석·보급
 - 나. 해외 제도 및 글로벌 시장 동향 조사
- 4. 수출·국제협력 및 산업 네트워크 확대
 - 가. 국내 제품의 수출 촉진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나.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증진
- 5. 인재 양성·홍보 및 산업 기반 조성
 - 가. 종사자 경영·직무역량 강화 교육
 - 나. 건전한 소비문화 홍보, 박람회·포럼·세미나 등 행사 개최
- ② 협회는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제규약 및 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또는 규정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하며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다.
- ②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자
 2. 현재는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제조·수입·유통업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10년 이상 해당 업을 수행한 자.
 3.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산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이력(동조업계 10년이상 종사자)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박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 ③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 기관, 업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 ①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금과 초회 회비를 납입한 후 협회 사무국의 승인통보를 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 ②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의에서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개선권, 안전에 대한 의결권
 2. 협회의 모든 선거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3년이상 정회원으로 있는 자에 한함.
 3. 협회가 생산하는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관련자료 및 정보를 받

을 권리

- ② 특별회원은 제1항 제1호의 의견개진권과 협회가 제공하는 반려동물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관련자료 및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이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비납부마감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은 제3호 준수 의무는 없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사항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자격이 상실된다.
 - 1. 사망 및 파산
 - 2. 본인의 탈퇴
 -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22조(특별의결사항)에 의하여 제명처분 될 수 있다.
 - 1.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2. 협회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④ 협회는 제3항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총회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협회는 총회개최 7일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와 총회에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탈퇴, 제명시 회원이 기납부한 당해연도 회비는 납부회비의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하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재임중인 임원에게서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퇴임한다.

③ 협회는 제1항 각호의 퇴임사유가 발생한 해당 임원에게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퇴임사유와 이사회에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정한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사 중 연장

자 순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협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

-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포함)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3. 결산의 승인
4. 차입금 한도의 승인
5. 부동산의 취득·처분
6. 회원의 제명
7. 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사전에 통지받은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보낼 경우 참석으로 간주한다.
- ③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본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특별의결사항)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제20조 제1호(정관의 변경), 제6호(회원의 제명)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0조 제7호(해산, 합병 또는 분할)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총회의 회기 연기)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 개최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일자가 지정되어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18조의 소집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의사록 작성)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 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총회 부의안
2. 규약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본 정관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안
5. 차입금 및 부동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총회 부의안
6. 본 협회의 해산 및 합병·분할에 관한 총회 부의안
7.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임원 퇴임에 관한 사항
8. 특별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의 건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②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6호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회장

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의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의 회의록)

-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록을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협회가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1조 (사업년도)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재원)

- ①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2. 협찬금
 3. 보조금
 4. 수수료
 5. 그 외의 수입금
- ② 제1항 제1호의 가입금과 회비는 규약으로 총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손의 처리)

본 협회는 회계연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존한다.

제35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① 협회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 협회의 수입 및 지출 예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보 칙

제36조 (해산 및 청산)

-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2. 주무부 장관의 해산명령

- ②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증 대상선정 및 기증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7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① 협회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등기보고)

- ①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②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40조 (시행 세칙)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규정 및 규약의 범위내에서 사무국이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 타

제41조 (위원회)

- ①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목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단법인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2026년 2월 27일

설립자 대표

조 성 호



설립자

권 혁 찬



설립자

김 광 현



설립자

김 상 덕



설립자

김 희 수



설립자

문 홍 식



설립자

신 창 환



설립자

이 수 지



설립자

이 진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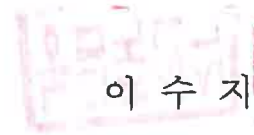
설립자

최 광 용



설립자

최 보 연



[별지]

재 산 목 록 (제 21 조 제 1 항 관 련)

총 계	11,600,000(원)				
1. 기본 재산	구 분	형 태	수 량	평가액(원)	출 연 자
	현 금	예금	1건	10,000,000	발기인들 출연
	소 계	예금	1건	10,000,000	-
2. 보통 재산	종 류	품 목	수 량	단가(원)	금액(원)
	사무 기기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1대	1,000,000	1,000,000
		데스크탑 모니터	1대	200,000	200,000
		사무용책상	1개	200,000	200,000
		사무용의자	1개	200,000	200,000
	소 계	-			1,600,000